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김영래 의원 외 6인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으로,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여비 지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